

해외건설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리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라 한다)와 해외건설협회(이하 "ICAK"라 한다)는 우리기업의 해외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KOTRA"와 "ICAK"(이하 "협약 당사자"라 한다)가 협약 당사자의 보유역량을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진출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협력 분야) "협약 당사자"는 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서 허용하고 각 사의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에 따른 부수업무에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해외 건설·플랜트 관련 정보 공유
2. 세미나 및 상담회 등 공동 사업의 개최
단, 사업 시기, 내용 등 관련 세부 사항은 별도의 협약을 통해 추진한다.
3. ICAK의 KOTRA 해외 무역관 활용에 관한 사항
단, 지역 및 활용 방식 등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협약을 통해 추진한다.
4. GtoG 방식의 해외 프로젝트 추진 시 ICAK의 KOTRA에 대한 사업 수행
적격 기업 추천 및 기업이행능력 평가 등의 업무 협력
5. 기타 협약 당사자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

제3조(업무협조) KOTRA와 ICAK는 제2조 각호의 세부 협력 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 워크숍 등을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기밀유지) 협약 당사자는 본 협력사업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제5조(협약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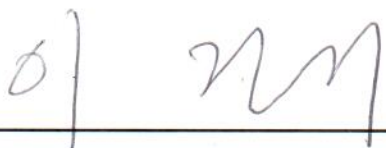
1. 본 협약은 아래 서명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서명일로부터 1년 동안 계약이 유효하다.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협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의 해지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제 4조(기밀유지)의 경우 본 협약이 종료되어도 계속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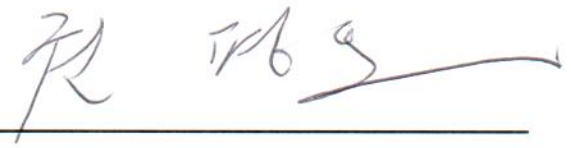
제6조(협약의 변경) 각 기관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양 기관이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추가 및 변경한다.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협약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2월 28일



해외건설협회
회장 이 건 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권 평 오